

서울특별시 금천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년 4월 25일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4월 15일, 고영찬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4년 4월 15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4년 4월 25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- 가. 제안이유
 -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
- 나. 주요내용
 -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적용 대상(안 제1조~제3조)
 - 개인정보 보호원칙 및 구청장의 책무(안 제4조 및 제5조)
 -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지정(안 제6조)
 - 개인정보 파일 등록·유출·파기에 관한 사항(안 제7조~제9조)
 - 수수료 청구 및 납부, 이의신청(안 제10조 및 제11조)
 - 개인정보보 보호 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(안 제12조 및 제13조)
 -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(안 제14조)

- 보험·공제 등의 가입(안 제15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본 조례 제정안은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1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
- 주요내용은
 - 안 제1조에서는 본 제정 조례의 목적에 대해서 기술하였고,
 -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상위법인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고 규정함으로써 입법 경제상 타당함.
 - 안 제3조에서는 이 조례의 적용범위를 금천구 소속행정기관에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함.
 - 안 제4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및 수집·관리,처리 원칙 등을 명시하는 것으로 「개인정보보호를 위한 OECD 가이드라인」을 근간으로 하고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조 규정인 ‘개인정보 보호 원칙’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여짐.

〈개인정보보호 OECD 가이드라인〉

1. **수집제한의 원칙** : 개인정보는 명확하고 합법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수집되어야 합니다. 또한,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.
2. **정보내용 정확성의 원칙** : 개인정보는 정확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. 부정확한 정보는 지체 없이 수정 또는 삭제되어야 합니다.
3. **수집목적 명확화의 원칙** : 개인정보는 수집 시에 그 목적을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. 또한, 개인정보는 수집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.
4. **이용제한의 원칙** : 개인정보는 수집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되어야 합니다. 또한, 개인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됩니다.
5. **안전확보의 원칙** : 개인정보는 분실, 유출, 변조, 누설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합니다. 이를 위해 적절한 기술적 및 조직적 안전조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.
6. **공개의 원칙** : 개인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, 수정, 삭제 등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. 또한, 개인정보 처리자가 수행하는 개인정보 처리 활동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.
7. **개인참가의 원칙** : 개인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이는 개인정보 처리 활동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합니다.
8. **책임의 원칙** : 개인정보 처리자는 자신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. 이를 위해 개인정보 처리 활동에 대한 적절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고,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.

- 안 제5조에서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, 오용·남용 및 무분별한 감사·추적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서 규정함.

- 안 제6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, 개인정보 분야별 책임자, 영상정보 관리 책임자 및 소관 부서 개인정보 보호 업무 전담 담당자 지정에 대해 규정함.
 - 안 제7조에서는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의무사항을 규정함.
 - 안 제8조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에 알려야 할 내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및 신고사항에 대해서 규정함.
 - 안 제9조에서는 개인정보 파기, 점검 등에 대해 규정함.
 - 안 제10조에서는 정보주체의 열람의 요구 등에 따른 수수료 청구 및 납부에 대해 규정함.
 - 안 제11조에서는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규정함.
 - 안 제12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 내용에 대해서
 - 안 제1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규정함.
 - 안 제14조에서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및 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.
 - 안 제15조에서는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 배상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·공제 가입에 대해 규정함.
- 최근 매스컴 보도에 의하면 기업 시스템 취약, 해킹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

출 및 침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음. 특히, 금융, 의료, 통신 등 민감 분야의 정보 유출은 더욱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와 보안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.

-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, 우리 구 특성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의 체계적·효율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 중앙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으로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